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88호 2024. 5. 16.(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2056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2057호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사천시 조례 제205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	12
○ 사천시 조례 제2059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사천시 조례 제2060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사천시 조례 제2061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사천시 조례 제2062호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5
○ 사천시 조례 제2063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사천시 조례 제2064호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사천시 조례 제206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사천시 조례 제2066호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사천시 조례 제206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사천시 조례 제2068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사천시 조례 제2069호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37
○ 사천시 조례 제2070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사천시 조례 제2071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사천시 조례 제2072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46

○ 사천시 조례 제2073호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 사천시 조례 제2074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사천시 조례 제2075호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 사천시 조례 제2076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3
○ 사천시 조례 제2077호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6
○ 사천시 조례 제2078호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58
○ 사천시 조례 제2079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8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	65
○ 사천시 고시 제2024-82호	사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	71
○ 사천시 고시 제2024-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	7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749호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	76
○ 사천시 공고 제2024-758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6
○ 사천시 공고 제2024-759호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0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7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56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지원”을 “심의·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을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을
“이주직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장
학금”을 “양육지원금, 전·입학장려금 지원”으로 하며,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대출이자”를 “대출이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거주지 지원”을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교통, 문화, 체육 등 편의 지원
5.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
6.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
7.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8.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주직원등은 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직원등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② 이주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사천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 (재)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운영세칙)”을“(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구분	신 규()	재발급()	처리기간	일
------	------	------	--------	--------	------	---

1. 이주직원 기재사항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남/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휴대전화
	현 주소 (체류지)			
	직전주소 (직전 체류지)			
공공기관 현황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직장전화	
	기관주소			
카드수령지	<input type="checkbox"/> 현주소지 <input type="checkbox"/> 직장주소 <input type="checkbox"/> 기타(수령지 아래 기재)			

2. 발급받을 사람

	이주직원 과의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기타기재사항					

위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가족)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주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 2.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없음
------	--	-----------

공무원 확인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인)	확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가족관계 확인(발급대상자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	확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재직사항 확인	확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① 본인(이주직원 외 가족)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미동의 시 신청인이 해당서류 직접 제출)
- ② 사천사랑카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추가 발급받을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천사랑카드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기관명, 기관주소 등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천사랑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정보제공 동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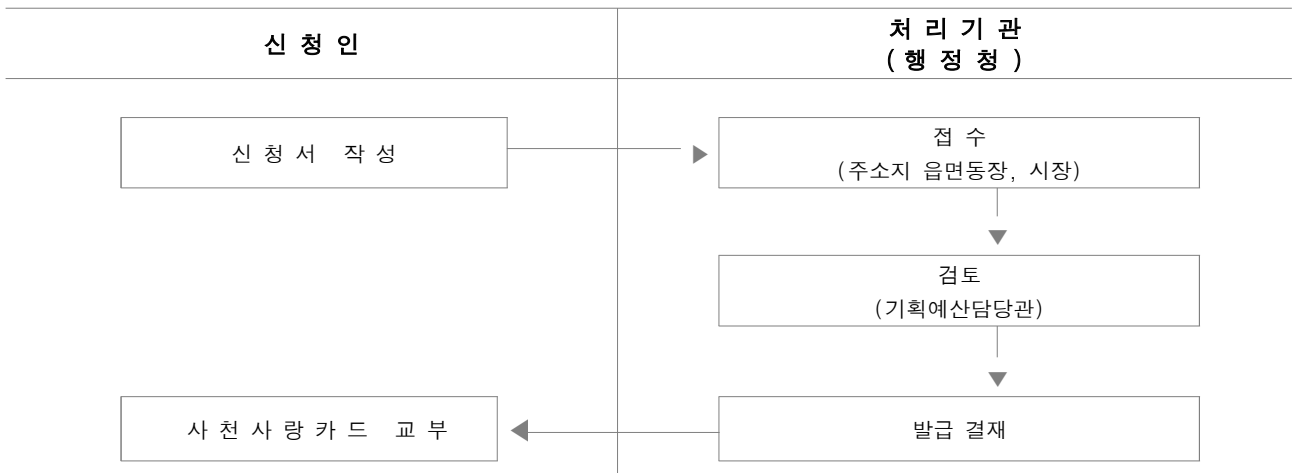
유의사항

사천사랑카드는 사천시로 전입한 공공기관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우대혜택은 예산사정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① 내국인은 대한민국을 적고, 외국인은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 ② 생년월일은 0000. 00. 00. 형태의 8자리로 적습니다.
- ③ 연락처는 본인의 휴대전화 등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현주소는 사천시로 전입한 주소를 적습니다.(주민등록된 주소)
- ⑤ 공공기관 등 현황은 이주직원이 소속된 기관명, 부서명, 직위, 기관주소, 직장연락처를 적습니다.
- ⑥ 가족사랑카드를 수령지를 V 표시합니다. 수령지가 기타인 경우 아래에 적습니다.
- ⑦ 관계는 이주직원은 본인으로, 가족인 경우 이주직원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주직원의 자녀인 경우 '자녀'로 적고, 이주직원의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모'로 적습니다.
- ⑧ 기타기재사항은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사천시 내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적습니다.
-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사천사랑카드

(앞면)

성명(생년월일)

사천사랑카드

(유효기간: . . .)

 사 천 시 장

규격: 85mm × 54mm

(뒷면)

안내사항란

- 사천사랑카드는 앞면의 기명 1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 바랍니다.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대장

연번	접수일	발급대상자						이주직원 인적사항			발급 번호	발급일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전입 전 시·군명	공공기관명	성명	관계				
														신규
														재발급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57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를 “사천시의”로, “제고함”을 “높이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권업무담당”을 “자치분권업무 담당”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를 “협의회의 회의”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58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제2조(복무선서) ①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1.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3.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 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 라.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5.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59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0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1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2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3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회”를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예상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4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항공우주 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를 “따른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13.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감경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5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상남도”를 “사천시”로, “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을 “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사업”을 “사업 및 각종 경비”로 한다.

5. 투자유치 포상금

제4장에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의3(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4(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9조의5(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의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1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6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를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 분야 과장급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위원에서”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7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8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수영장”을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수영장”을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2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69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사업자 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
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8.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0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1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2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4. 5. 16.>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캐빈	크리스탈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 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대인	9,000원	12,000원	1명 요금
	소인	8,000원	10,000원	

-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대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대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10.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11.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1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4. 5. 16.>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아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50,000	20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80,000	110,000	150,000	
일반캠핑	6m×8m (4인용)	1면/1일	25,000	30,000	35,000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아하우스), 글램핑, 일반캠핑은 1명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3] <개정 2024. 5. 16.>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을(제7조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7.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8.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5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2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른 당일 이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3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영해양경찰서장, 사천소방서장, 진주기상대장”을 “사천해양경찰서장, 사천소방서장, 창원기상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시설명란의 샤워장 중 시설사용료 “1,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4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수단”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5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를 “사천시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로,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정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할인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조 중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6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4. 5. 16.>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정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11.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5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 				

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7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사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8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사천시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적정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 사유로 조기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항공료, 교통비, 숙박료 등 입국 또는 출국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
3. 건강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작업복 등 생필품비,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통역·번역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마약 검사 포함)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 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담당자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2079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을 “강의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 용허”를 “사용허”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중 “위촉”을 “위촉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고시 제2024-8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내용

연번	시설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사업량		위험도 평가 점수	비고
	구분	명칭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연장	폭		
1	세천	심방골세천2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511	1606-59	350	3.5	75	
2	세천	상탑세천	사천시	축동면	탑리	383	556	310	3.6	72	
3	세천	양월세천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504	455-3	1,100	6.3	71	
4	세천	덕골세천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363	산40-1	1,000	5.4	71	
5	소교량	구량1교	사천시	서포면	구량리	965-21	967-8	12	5.0	74	

2.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시설명칭		사업시기	소요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구분	명칭				
세천	심방골세천2	2024~2025년	200	세천 정비 (L=350m, B=3.5)	
세천	상탑세천	2024~2025년	200	세천 정비 (L=310m, B=3.6)	
세천	양월세천	2024~2025년	200	세천 정비 (L=1,100m, B=6.3)	
세천	덕골세천	2024~2025년	200	세천 정비 (L=1,000m, B=5.4)	
소교량	구량1교	2024~2025년	200	소교량 보수 (L=12m, B=5.0m)	

※ 사업 시기, 예산, 내용 등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3.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경상남도 사천시청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2024. 5. 16.

5. 문의처: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5)

위치도 및 현장사진(심방골세천2)



위치도 및 현장사진(상탑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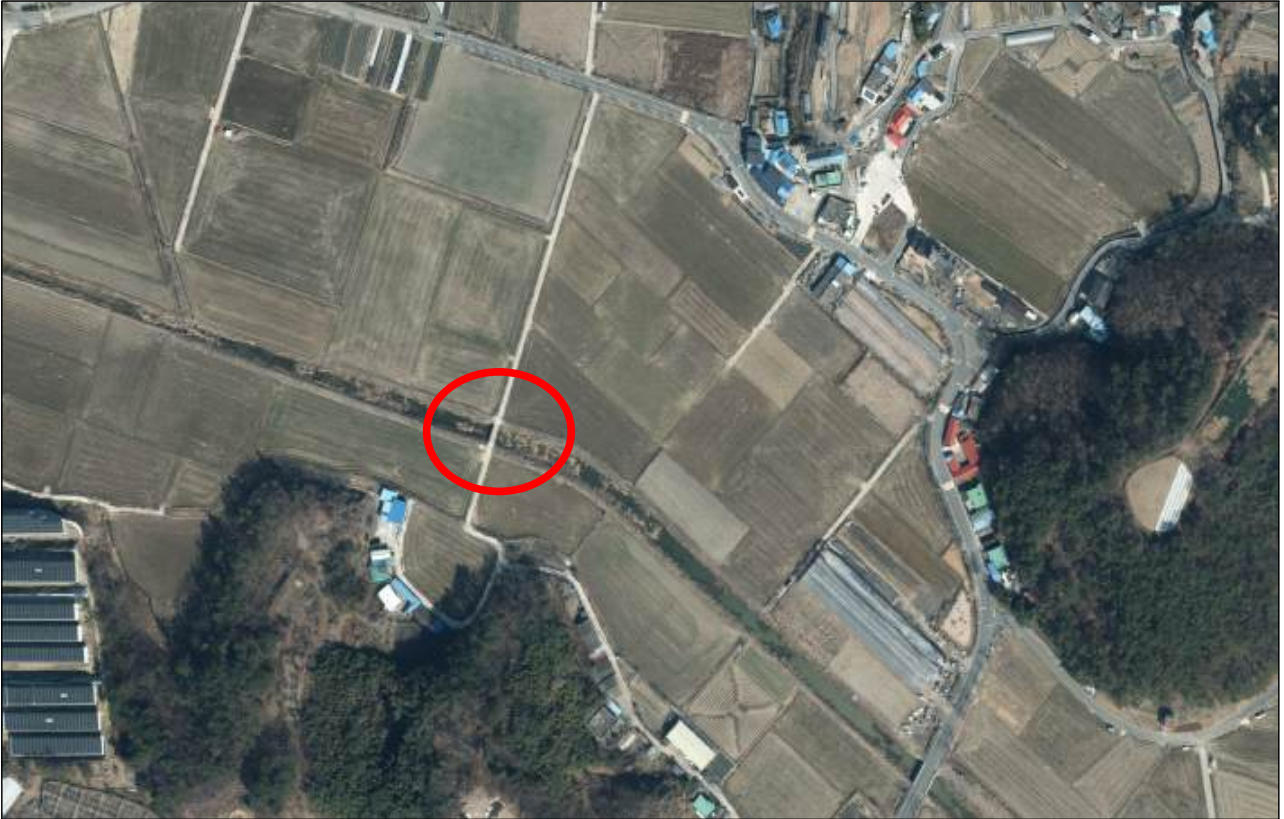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장사진(양월세천)



위치도 및 현장사진(덕골세천)



위치도 및 현장사진(구랑1교)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고시 제2024-82호

사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업명: 사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 사업목적: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3. 사업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
4. 사업비: 7,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630 시비 1,470)
5. 사업기간: 2022년~2025년(4년)
6. 사업시행자: 사천시, 사천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7. 주요사업내용

1) 사람에 빠지다

가. 신활력추진단 운영

나. 신활력아카데미

2) 농촌마을에 빠지다

가. 사천시 특화 먹거리 개발

나.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 개발

다. 농촌관광 홍보·마케팅

라. 휴공간 확보(확대) 및 활용

3) 공동체 활동에 빠지다

가. 농촌관광 플랫폼 조성

8.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도시재생과(☎055-831-3242) 또는 사천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055-834-2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9. 사업계획표

(단위: 백만원)

부문별	사업명	사업비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총 계		7,000	4,900	2,100	
사람에 빠지다	신활력추진단 운영	525	367.5	157.5	
	신활력아카데미	545.6	381.92	163.68	
	소 계	1,070.6	749.42	321.18	
농촌마을에 빠지다	사천시 특화 먹거리개발	925	647.5	277.5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축제 개발	857	599.9	257.1	
	농촌관광 홍보·마케팅	554	387.8	166.2	
	휴공간 확보(확대) 및 활용	400	280	120	
	소 계	2,736	1,915.2	820.8	
공동체 활동에 빠지다	농촌관광 플랫폼 조성	2,874.372	2,012.06	862.31	
	소 계	2,874.37	2,012.06	862.31	
제경비	부대비용	319.03	223.32	95.71	
	소 계	319.03	223.32	95.71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10.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m ²)		소유자		비 고
	위 치	지 번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1	용현면 금문리	614	전	1,924	1,924	국 (기획재정부)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고시 제2024-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6.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사항

허가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허가기간	피 허가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4-3 (2024.5.10.)	해상공사 사도 반입 반출을 위한 물량장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계: 2,946 직접: 762 간접: 2,184	2024. 4. 1. ~ 2024. 12. 31.	사천시 삼천포 대교로 699-1	㈜대림산업개발 대표 김종진	기간연장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공고 제2024-749호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송지3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3년 송지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146필지, 30,144.0m²
4. 지적확정조서: 붙임문서 참조
5.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6. 공람장소: 사천시 토지관리과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사천시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378)

2023년 송지3지구 지적확정조서

번 호	종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	용현면	송지리	146	도로	400.0	용현면	송지리	146	도로	365.7	0.0	34.3	국(농림축 산식품부)		
2	용현면	송지리	269	하천	638.0	용현면	송지리	269	하천	639.1	1.1	0.0	경상남도		
3	용현면	송지리	410-2	대	13.0	용현면	송지리	410-2	대	3.1	0.0	9.9	강*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4	용현면	송지리	410-3	도로	146.0	용현면	송지리	410-3	도로	599.3	201. 3	0.0	사천시		
			411-1	도로	16.0										
			412-2	도로	60.0										
			413-5	도로	112.0										
			427-1	도로	2.0										
428-2	도로	9.0													
			1163- 119	도로	53.0										
5	용현면	송지리	411	대	190.0	용현면	송지리	411	대	164.2	0.0	25.8	강*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 ***동 ***호 (덕진봄아파 트)	
6	용현면	송지리	413	대	259.0	용현면	송지리	413	대	277.1	18.1	0.0	박*봉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7	용현면	송지리	418	대	227.0	용현면	송지리	418	대	231.3	4.3	0.0	문*순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동 ***호(용호동, 지에스하이츠 자이)	
8	용현면	송지리	418-2	도로	100.0	용현면	송지리	418-2	도로	282.6	44.6	0.0	사천시		
			420-2	도로	24.0										
			421-1	도로	39.0										
			422-1	도로	75.0										
9	용현면	송지리	419-1	도로	75.0	용현면	송지리	419-1	도로	45.7	0.0	29.3	사천시		

번 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0	용현면	송지리	420	대	430.0	용현면	송지리	420	대	457.8	27.8	0.0	최*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0	용현면	송지리	420	대	430.0	용현면	송지리	420	대	457.8	27.8	0.0	최*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1	용현면	송지리	423	대	255.0	용현면	송지리	423	대	367.6	112.6	0.0	김*영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2	용현면	송지리	425	대	419.0	용현면	송지리	425	대	444.8	25.8	0.0	강*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3	용현면	송지리	427	대	458.0	용현면	송지리	427	대	453.1	0.0	4.9	강*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4	용현면	송지리	428	대	620.0	용현면	송지리	428	대	547.4	0.0	72.6	강*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5	용현면	송지리	428-1	대	199.0	용현면	송지리	428-1	대	367.4	0.0	232.6	김*곤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 ***호	
			1163-58	대	401.0										
16	용현면	송지리	428-3	답	299.0	용현면	송지리	428-3	답	328.9	29.9	0.0	강*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7	용현면	송지리	429	전	849.0	용현면	송지리	429	전	779.7	0.0	69.3	박*영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 ***동 ***호	
18	용현면	송지리	430	대	155.0	용현면	송지리	555	대	394.5	0.0	51.5	박*금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53-4	대	33.0										
			554	대	43.0										
			555	대	215.0										
19	용현면	송지리	431	대	281.0	용현면	송지리	431	대	316.4	35.4	0.0	대표 미지정(2 명)		
20	용현면	송지리	432	전	56.0	-	-	-	-	말소	0.0	56.0	대표 미지정(2 명)		
21	용현면	송지리	433	대	367.0	용현면	송지리	433	대	514.8	15.8	0.0	강*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호	
			434	대	132.0										
22	용현면	송지리	435	대	473.0	용현면	송지리	435	대	473.0	0.0	0.0	박*욱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 ***동 ***호 (남강휴먼빌 아파트)	

번 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23	용현면	송지리	436	대	109.0	용현면	송지리	436	대	71.4	0.0	37.6	박*기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 ***동 ***호	
24	용현면	송지리	437	대	423.0	용현면	송지리	437	대	406.4	0.0	16.6	강*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호	
25	용현면	송지리	438	대	660.0	용현면	송지리	438	대	543.7	0.0	116. 3	김*석	경상남도 진주시 돛골로*번길 * (상평동)	
26	용현면	송지리	438-1	대	497.0	용현면	송지리	438-1	대	483.0	0.0	14.0	임*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길 *** **동 ***호(교방동 무학사백사불 루밍아파트* 단지)	
27	용현면	송지리	441	대	364.0	용현면	송지리	441	대	364.0	0.0	0.0	조*록(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28	용현면	송지리	441-1	도로	19.0	용현면	송지리	531-1 1	도로	638.5	341. 5	0.0	사천시		
			531-1 1	도로	76.0										
			545-1 0	도로	159.0										
			545-1 3	도로	43.0										
29	용현면	송지리	442	대	321.0	용현면	송지리	442	대	308.5	0.0	12.5	임*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30	용현면	송지리	443	대	261.0	용현면	송지리	443	대	259.4	0.0	1.6	천*연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로 ** ***동 ***호	
31	용현면	송지리	444	대	278.0	용현면	송지리	444	대	227.0	0.0	51.0	문*순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동 ***호(용호동 지에스하이츠 자이)	
32	용현면	송지리	531-4	도로	76.0	용현면	송지리	531-4	도로	76.0	0.0	0.0	대표 미지정(2 명)		
33	용현면	송지리	531-1 2	구거	31.0	-	-	-	-	말소	0.0	31.0	사천시		
34	용현면	송지리	532-1	대	211.0	용현면	송지리	532-1	대	211.0	0.0	0.0	강*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35	용현면	송지리	532-4	대	189.0	용현면	송지리	541	대	506.6	0.0	3.4	강*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41	대	321.0										

번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m ²)	감소(m ²)	성명	주소	
36	용현면	송지리	533-1	수도용지	23.0	용현면	송지리	533-1	수도용지	21.5	0.0	1.5	국(환경부)		
37	용현면	송지리	533-2	수도용지	29.0	용현면	송지리	533-2	수도용지	29.0	0.0	0.0	국(환경부)		
38	용현면	송지리	533-3	수도용지	11.0	용현면	송지리	533-3	수도용지	11.0	0.0	0.0	최*거		
39	용현면	송지리	534-1	수도용지	77.0	용현면	송지리	534-1	수도용지	77.0	0.0	0.0	대표 미지정(2명)		
40	용현면	송지리	535-1	답	144.0	용현면	송지리	535-1	답	144.0	0.0	0.0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사천청구타운)	
41	용현면	송지리	535-2	구거	50.0	용현면	송지리	535-2	구거	50.0	0.0	0.0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사천청구타운)	
42	용현면	송지리	535-3	답	17.0	용현면	송지리	535-3	답	17.0	0.0	0.0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사천청구타운)	
43	용현면	송지리	535-4	수도용지	514.0	용현면	송지리	535-4	수도용지	514.0	0.0	0.0	대표 미지정(2명)		
44	용현면	송지리	535-5	답	1,445.0	용현면	송지리	535-5	답	1,914.0	0.0	0.0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사천청구타운)	
			536-3	답	469.0										
45	용현면	송지리	535-6	수도용지	132.0	용현면	송지리	535-6	수도용지	121.3	0.0	10.7	국(환경부)		
46	용현면	송지리	536-1	대	96.0	용현면	송지리	536-1	대	13.3	0.0	82.7	박*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47	용현면	송지리	536-2	구거	109.0	용현면	송지리	536-2	구거	109.0	0.0	0.0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사천청구타운)	
48	용현면	송지리	536-4	답	7.0	용현면	송지리	536-4	답	7.0	0.0	0.0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읍동길 **, ****동 ****호 (사천청구타운)	

번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m ²)	감소(m ²)	성명	주소	
49	용현면	송지리	537	대	245.0	용현면	송지리	537	대	343.0	98.0	0.0	박*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0	용현면	송지리	538-1	대	281.0	용현면	송지리	538-1	대	303.2	22.2	0.0	장*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1	용현면	송지리	538-2	대	3.0	용현면	송지리	538-2	대	3.0	0.0	0.0	강*문		
52	용현면	송지리	539-1	대	152.0	용현면	송지리	539-1	대	171.4	19.4	0.0	박*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3	용현면	송지리	539-2	대	20.0	용현면	송지리	539-2	대	20.0	0.0	0.0	박*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4	용현면	송지리	540	대	155.0	용현면	송지리	540	대	203.1	48.1	0.0	강*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5	용현면	송지리	542-1	대	366.0	용현면	송지리	542-1	대	360.7	0.0	5.3	박*현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로 ** ****동 ****호	
56	용현면	송지리	542-2	대	7.0	용현면	송지리	542-2	대	7.0	0.0	0.0	강*봉		
57	용현면	송지리	543-1	대	232.0	용현면	송지리	543-1	대	320.2	88.2	0.0	대표 미지정(2 명)		
58	용현면	송지리	544	대	486.0	용현면	송지리	544 544-1	대 대	320.2 67.0	0.0	98.8	대표 미지정(2 명)		
59	용현면	송지리	545-3	구거	46.0	-	-	-	-	말소	0.0	46.0	사천시		
60	용현면	송지리	545-1 1	도로	73.0	용현면	송지리	545-1 1	도로	200.1	127.1	0.0	사천시		
61	용현면	송지리	545-1 2	구거	97.0	-	-	-	-	말소	0.0	97.0	사천시		
62	용현면	송지리	546	대	407.0	용현면	송지리	546	대	381.1	0.0	25.9	강*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호 (중동, 롯데캐슬비치)	
63	용현면	송지리	546-2	답	7.0	용현면	송지리	546-2	답	7.0	0.0	0.0	강*환		
64	용현면	송지리	548	대	235.0	용현면	송지리	548	대	260.9	25.9	0.0	강*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호 (중동, 롯데캐슬비치)	
65	용현면	송지리	550-1	전	39.0	용현면	송지리	550-1	전	195.2	156.2	0.0	박*금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번 번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66	용현면	송지리	550-2	대	1,098.0	용현면	송지리	550-2	대	1,011.4	0.0	86.6	이*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67	용현면	송지리	550-3	전	41.0	-	-	-	-	말소	0.0	41.0	이*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68	용현면	송지리	550-4	전	77.0	용현면	송지리	550-4	전	68.7	0.0	8.3	강*덕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69	용현면	송지리	550-5	전	174.0	용현면	송지리	550-5	전	166.1	0.0	7.9	이*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70	용현면	송지리	551-1	대	774.0	용현면	송지리	551-1	대	743.4	0.0	30.6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동*로 ** ***동 ***호	
71	용현면	송지리	551-2	대	179.0	용현면	송지리	551-2	대	179.0	0.0	0.0	대표 미지정(7 명)		
72	용현면	송지리	552-1	대	17.0	용현면	송지리	552-1	대	17.0	0.0	0.0	이*자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73	용현면	송지리	552-2	대	202.0	용현면	송지리	552-2	대	214.1	12.1	0.0	대표 미지정(2 명)		
74	용현면	송지리	553	대	294.0	용현면	송지리	553	대	276.4	0.0	17.6	강*덕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75	용현면	송지리	553-1	대	6.0	용현면	송지리	553-1	대	60.1	50.1	0.0	박*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56-5	대	4.0										
76	용현면	송지리	553-2	대	59.0	용현면	송지리	553-2	대	70.1	11.1	0.0	강*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번길 ** *동 ***호 (주례동 럭키 아파트)	
77	용현면	송지리	553-3	대	44.0	용현면	송지리	553-3	대	44.0	0.0	0.0	강*선		
78	용현면	송지리	556	대	69.0	용현면	송지리	556	대	36.5	0.0	32.5	박*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79	용현면	송지리	556-1	대	50.0	용현면	송지리	556-1	대	50.0	0.0	0.0	강*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번길 ** *동 ***호 (주례동 럭키 아파트)	

번 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80	용현면	송지리	556-2	대	32.0	용현면	송지리	558	대	288.4	25.4	0.0	박*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556-3	대	13.0										
			558	대	218.0										
81	용현면	송지리	556-4	대	44.0	용현면	송지리	556-4	대	44.0	0.0	0.0	강*선		
82	용현면	송지리	557	대	357.0	용현면	송지리	557	대	382.6	25.6	0.0	이*선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83	용현면	송지리	559	전	407.0	용현면	송지리	559	전	322.4	0.0	84.6	정*효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안골길** 번길* ***동***호	
84	용현면	송지리	560-1	구거	165.0	용현면	송지리	560-1	구거	165.0	0.0	0.0	천*철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길 **	
85	용현면	송지리	560-2	답	1,570. 0	용현면	송지리	560-2	답	1,570. 0	0.0	0.0	천*철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길 **	
86	용현면	송지리	560-3	답	50.0	용현면	송지리	560-3	답	50.0	0.0	0.0	강*식	***	
87	용현면	송지리	561	하천	45.0	용현면	송지리	561	하천	72.5	27.5	0.0	경상남도		
88	용현면	송지리	562	하천	113.0	용현면	송지리	562	하천	212.4	99.4	0.0	경상남도		
89	용현면	송지리	563	하천	228.0	용현면	송지리	563	하천	228.0	0.0	0.0	강*수		
90	용현면	송지리	564	임야	162.0	용현면	송지리	564	임야	162.0	0.0	0.0	박*신		
91	용현면	송지리	565	하천	48.0	용현면	송지리	565	하천	48.0	0.0	0.0	강*식	***	
92	용현면	송지리	565-1	하천	28.0	용현면	송지리	565-1	하천	204.8	176. 8	0.0	경상남도		
93	용현면	송지리	566-1	답	109.0	용현면	송지리	566-1	답	115.6	6.6	0.0	경상남도		
94	용현면	송지리	566-2	답	200.0	용현면	송지리	566-2	답	200.0	0.0	0.0	박*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95	용현면	송지리	566-3	하천	12.0	용현면	송지리	566-3	하천	51.9	39.9	0.0	경상남도		
96	용현면	송지리	567	전	245.0	용현면	송지리	567	전	245.0	0.0	0.0	하*춘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	
97	용현면	송지리	568	대	278.0	용현면	송지리	568	대	278.0	0.0	0.0	하*춘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	

번 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98	용현면	송지리	569	답	460.0	용현면	송지리	569	답	460.0	0.0	0.0	하*춘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	
99	용현면	송지리	569-2	답	202.0	용현면	송지리	569-2	답	202.0	0.0	0.0	하*춘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	
100	용현면	송지리	569-5	수도용 지	128.0	용현면	송지리	569-5	수도용 지	116.7	0.0	11.3	국(환경부)		
101	용현면	송지리	570-2	전	170.0	용현면	송지리	570-2	전	170.0	0.0	0.0	박*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동*로 ** ***동 ***호	
102	용현면	송지리	570-6	전	124.0	용현면	송지리	570-6	전	124.0	0.0	0.0	박*연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03	용현면	송지리	570-1 1	하천	122.0	용현면	송지리	570-1 1	하천	120.5	0.0	1.5	경상남도		
104	용현면	송지리	570-1 2	하천	70.0	용현면	송지리	570-1 2	하천	66.5	0.0	3.5	경상남도		
105	용현면	송지리	570-1 3	하천	121.0	용현면	송지리	570-1 3	하천	108.1	0.0	12.9	경상남도		
106	용현면	송지리	570-1 4	하천	81.0	용현면	송지리	570-1 4	하천	107.6	26.6	0.0	경상남도		
107	용현면	송지리	1163- 56	도로	65.0	용현면	송지리	1163- 56	도로	141.9	76.9	0.0	사천시		
108	용현면	송지리	1163- 57	대	168.0	용현면	송지리	1163- 57	대	312.4	144. 4	0.0	강*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09	용현면	송지리	1163- 59	하천	142.0	용현면	송지리	1163- 59	하천	142.0	0.0	0.0	국(기획재 정부)		
110	용현면	송지리	1163- 60	대	28.0	-	-	-	-	말소	0.0	28.0	국(기획재 정부)		
111	용현면	송지리	1163- 107	도로	167.0	용현면	송지리	1163- 107	도로	61.0	0.0	106. 0	사천시		
112	용현면	송지리	1163- 110	하천	16.0	용현면	송지리	1163- 110	하천	36.9	20.9	0.0	사천시		
113	용현면	송지리	1163- 111	하천	105.0	용현면	송지리	1163- 111	하천	67.8	0.0	37.2	경상남도		
114	용현면	송지리	1163- 112	하천	51.0	용현면	송지리	1163- 112	하천	43.5	0.0	7.5	국(기획재 정부)		
115	용현면	송지리	1163- 120	하천	190.0	용현면	송지리	1163- 120	하천	100.5	0.0	89.5	국(국토교 통부)		
116	용현면	송지리	1163- 121	하천	51.0	용현면	송지리	1163- 121	하천	33.0	0.0	18.0	국(국토교 통부)		
117	용현면	송지리	1163- 122	하천	246.0	용현면	송지리	1163- 122	하천	78.0	0.0	168. 0	국(국토교 통부)		

번 번호	종전토지					확정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 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주소	
118	용현면	송지리	1177	도로	1,787.0	용현면	송지리	1177	도로	399.5	0.0	510.1	국(국토교통부)		
								1177-12	도로	195.2					
								1177-13	도로	57.4					
								1177-14	도로	47.2					
								1177-15	도로	108.8					
								1177-16	도로	15.8					
								1177-17	도로	52.3					
								1177-18	도로	54.6					
								1177-19	도로	81.5					
								1177-20	도로	264.6					
119	용현면	송지리	1177-3	대	31.0	-	-	-	-	말소	0.0	31.0	강*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평송길 ***	
120	용현면	송지리	1177-4	도로	15.0	-	-	-	-	말소	0.0	15.0	국(국토교통부)		
121	용현면	송지리	1177-5	도로	16.0	용현면	송지리	1177-5	도로	16.0	0.0	0.0	국(국토교통부)		
122	용현면	송지리	1177-8	대	14.0	용현면	송지리	1177-8	대	14.0	0.0	0.0	국(기획재정부)		
123	용현면	송지리	1177-11	도로	16.0	용현면	송지리	1177-11	도로	13.6	0.0	2.4	국(국토교통부)		
124	용현면	송지리	1185-9	구거	11.0	-	-	-	-	말소	0.0	11.0	국(농림축산식품부)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공고 제2024-758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학교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다.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환경영향검토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사항(안 제10조~제22조)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마.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30조)

바.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근거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천시, 사업자 및 사천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사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제3조(기본원칙)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이나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합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시민 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제19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 재원확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협력강화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경정책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환경기본조례」”를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로, “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사천시 자연환경기본조례」에 의한 사천시환경위원회”를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제15조”를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23조”로 한다.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환경보전활동 재원확보 등(안 제2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환경보전활동 지원 44,200천원
 - 환경정화활동, 생태교란식물 제거, 자연보호 군집기 제작, 비치코밍, 읍면동 환경가꾸기,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등
- 환경보전활동 지원 예상 연간 비용이 44,2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환경보호과장 장수영

관 련 법 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

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공고 제2024-759호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조례 제1993호, 2023.11.23.)가 제정됨에 따라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규칙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의 폐지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88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2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협의회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1명으로 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항 등

제17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호선(互選)된 공동협의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